

01



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평가 개선조치의 이행

- 근로자 개인의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습관화
- 사업장내 근로자가 취급·사용하는 모든 설비 및 도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내용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
- 평가결과 개선 대책의 이행과 개선 대책을 완료한 후 위험성 평가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도입

02



안전작업 허가 제도 준수 및 작업 중 허가사항 준수 여부 확인

-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
- 작업전·중·후 안전보건조치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
- 안전작업허가 절차는 작업시작 전과 최종 작업이 종료된 후 확인을 포함

05



화기 취급시 화재·폭발 예방조치 실시

- 용접·용단 등 화기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 곳에서만 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장소에서는 소화기 비치 및 방염포, 불꽃비산방지막 등 설치, 화재 감시원 지정·배치
-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화기취급(정전기, 마찰열, 불꽃, 전기스파크 등의 발생)을 절대 금지
-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에 실패 시에는 지체 없이 대피하도록 사전 대피경로 확보 및 대피 훈련 실시

06



지게차 등 운반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

- 지게차, 페이로더, 구내운반차 등 하역운반기계는 자격보유자 또는 교육 이수자만 지정하여 운행
-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구역내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
- 지게차를 고소작업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
- 운전시야를 확보하고 운행속도 준수

03



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

- 점검·수리·보수 및 설치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주요 위험정보제공
-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원청이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실시 여부 확인

04



유해·위험물질 취급·사용 설비·도구·용기 등의 관리 철저

- 인화성 또는 유독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를 통해 유해·위험성 재인식
- 인화성물질 취급 용기 등의 임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특히, 밀폐용기의 용접·용단은 절대 금지

07



크레인 등 운반작업 안전조치 이행

-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권상브레이크 등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상태 확인
- 작업시작전 크레인의 와이어로프, 보조달기구, 후크해지장치 등을 점검
- 화물의 아래나 흔들리는 방향에 근로자 접근 금지
- 크레인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허용하중 범위의 화물만 취급

08



청소·수리·점검·조정 등의 작업시 사용전원 차단 # 잠금장치 및 작업중 조작금지 표지판 사용

- 설비·장치 등의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사용
- 다른 근로자가 임의 조작하지 않도록 작업을 감시
-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또는 대형 설비의 점검·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연락 수단(오조작을 방지를 위한 복명복창 생활화)